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 신설 등〉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06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기한 구속력 강화	5
2.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 신설	9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승래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4. 29.
- (3) 회 부 일 : 2025.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 결정이 장기간 보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결정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간의 연장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

을 높이 고자 함(안 제26조제4항 단서 및 제26조의3제2항·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 기한을 신청일부터 90일로 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6조제4항),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에도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의 지급 결정 기한을 90일로 신설하면서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안 제 2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보상금) ① ~ ③ (생략)	제26조(보상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 ---신청일부터----- ----- -----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의 연장 사실과 사유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포상금 등) ① (생략) <u><신설></u>	제26조의3(포상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아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의 연장 사실과 사유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신설></u>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략)	

1.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기한 구속력 강화

□ 현행법 제26조제1항¹⁾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은 이러한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을 때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보상금 지급 신청 ↓	· 신고자가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	· 보상금의 지급 요건, 지급 사유 등 조사·확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	· 보상금의 지급 요건,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전원위원회의 지급 결정 ↓	·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 보상금 결정서 정본, 결정통지서 신고자에게 송부 및 보상금 지급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 그런데, 현행 규정은 보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규정하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사유”라는 포괄적 용어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결정 기한을 연장하는 범위도 설정하고 있지 않음.

○ 공익신고법상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입을 수 있는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보전하고 나아가 공익신고를 장려 및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조치²⁾임을 고려할 때,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적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급 결정 기한인 90일을 초과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년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2년 182일, 2023년 169일, 2024년 164일에 이르고 있음.

<최근 3년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현황>

연도	처리건수		평균 처리기간	
	전체	90일 초과 사건	전체	90일 초과 사건
2022	269건	80건(29.7%)	129일	182일
2023	251건	26건(10.4%)	101일	169일
2024	320건	41건(12.8%)	98일	164일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8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기한과 연장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연장 시 통지의무를 부여하여 지급 결정 기한의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신고자가 예측가능한 시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공익신고 보상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 다만, 공익신고 보상금의 경우 권익위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 수사기관 등³⁾에서 접수·처리된 사건까지 검토하여 지급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급 결정 기한에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 신고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취합, 사실관계 파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공익신고, 부패신고 등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⁴⁾에 따른 부패신고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 절차와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장기간 보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나, 타 기관 신고에 대한 지급요건⁶⁾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이 아닌 ‘60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부정청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정비할 필요 없음.

6) 신고일자, 신고접수기관 처리결과, 조사수사재판결과, 관계 공공기관 조치 결과, 내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회복 및 직접적인 관련성, 감액사유 등

2.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 신설

□ 현행법 제26조의3⁷⁾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공익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은 공익을 위한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지급 사유에 있어, 보상금은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에 결부하여 지급되는 것이나, 포상금은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음.

○ 지급 대상에 있어, 보상금은 내부 신고자에 한정되나, 포상금은 신고자, 협조자도 그 대상이 됨.

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3(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청 주체에 있어, 보상금은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검토되는데 반해, 포상금은 신고 접수 기관의 추천 또는 권익위의 직권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함.

<공익신고 보상금과 포상금 비교>

구분	공익신고 보상금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사유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지급 대상	내부 신고자	신고자, 협조자
지급 신청(추천) 주체	내부 신고자	신청받지 않음 (기관추천 또는 권익위 직권)
지급액 산정기준	▪ (상한) 없음 ▪ (하한) 30만원 ※ 보상금의 산정기준(p.12.)참고	▪ (상한) 5억원 ▪ (하한) 없음 ※ 포상금의 산정기준(p.13.) 참고
대표 사례	폐수 무단방류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 보상금(3억6천만원) 지급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5천만원) 지급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절차⁸⁾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다른 기관⁹⁾ 추천에 따른 포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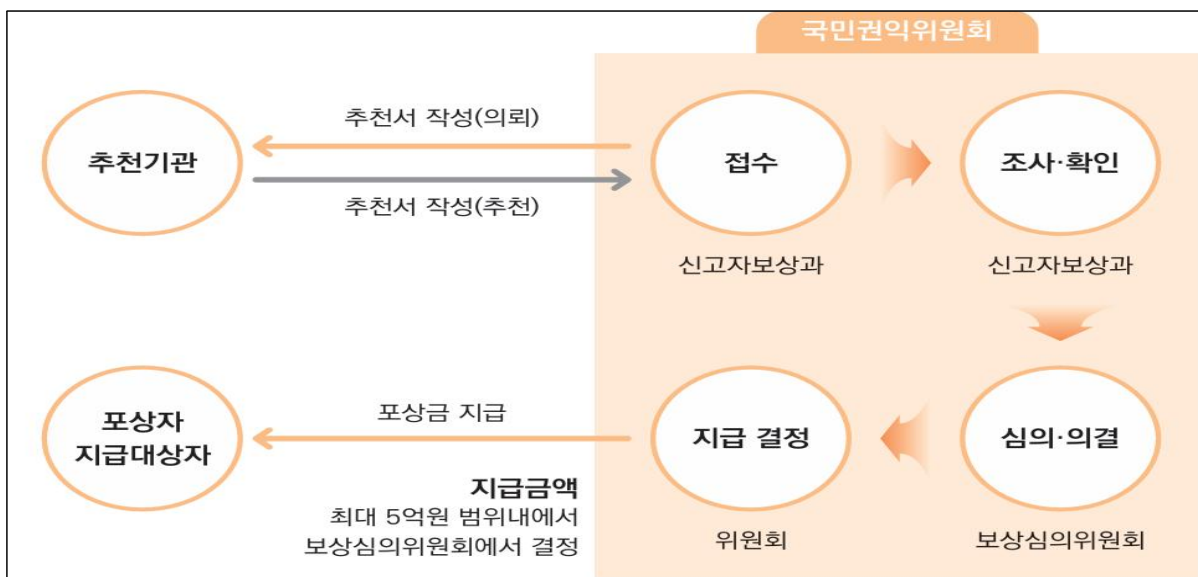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9)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지급 결정의 경우 보상금과 같이 결정 기한(90일) 및 연장 가능 기한(30일)을 신설하려는 것임.

- 공익신고 포상금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운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의 공익신고 포상 행정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도 적시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결정 절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따라서,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익신고 포상금도 추천을 받은 후 일정 기한 내에 지급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최근 3년간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90일 내 지급 결정하고 있으나 2023년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이 152일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상·하반기 2회 추천을 받아 연말에 1회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기관추천 처리 절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결정 현황>

연도	추천건수		평균 처리기간	
	전체	90일 초과사건	전체	90일 초과사건
2022	25건	-	44일	-
2023	22건	12건(54.5%)	152일	231일
2024	22건	-	75일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또한,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함께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권익위는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규정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포상금의 경우 추천 기관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보완하므로 개정안의 지급 결정 기한(90일)과 연장 가능 범위

(30일)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07

참고1**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산정기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비고 : “보상대상가액”이란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표 2]

포상금 지급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익증진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내부 공익신고자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에 따라 위원회가 지급할 수 있다.

나.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따라서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라. 포상금의 감액 등은 보상금의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마.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산정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바. 보상심의위원회는 처분의 경중·기간·금액·인원 수·내부 공익신고자 여부·공익증진 기여도 등에 따라 유형별로 정하여진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사. 보상심의위원회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정도나 그 공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유형별로 정하여진 금액기준의 차하급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아. 보상심의위원회는 사회적 파급효과, 공익침해행위 해결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정도나 그 공적이 상당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유형별로 정하여진 금액 기준의 최상급 기준까지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신분상 사법처분

금액기준	유형
1) 5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2) 3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3) 1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4) 5,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5) 3,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6) 1,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7) 5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월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비고: 1.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된 형(징역, 금고, 벌금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2. 벌금(노역장유치 포함), 몰수 등 재산형의 경우에는 "라. 금전적 처분"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3. 2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들을 모두 합산하여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나.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

금액기준	유형
1) 5억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2) 3억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7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1억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5명 이상 7명 미만인 경우
4) 5,000만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2명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5) 3,000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영업·업무·제조·효력·면허·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6) 1,000만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영업·업무·제조·효력·면허·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7) 500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영업·업무·제조·효력·면허·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비고 : 1. 2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정지처분은 정지처분과 합산하고, 취소·철회·말소 처분은 취소·철회·말소처분과 합산하여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폐쇄명령 등 중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허가·인가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을 준용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하고, 주의·경고 등 경미한 시정명령 및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기여

금액기준	유형
1) 5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률의 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2) 3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법률의 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3) 1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률 또는 2개 이상의 법령의 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4) 5,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5) 3,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총리령·부령·조례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
6) 1,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지침 등 행정규칙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7) 500만원 이하	그 밖에 공익신고로 인하여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 비고 : 1.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이 함께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1개의 법령이 제·개정된 것으로 본다.
2. 법령 등의 개정의 경우에는 전부개정, 일부개정 등 개정의 정도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나 지침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제도개선 사항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금전적 처분

금액기준	유형
1) 5억원 이하	20억원을 초과하는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2) 3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3) 1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4) 5,000만원 이하	2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5) 3,0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6) 1,000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7) 500만원 이하	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

금액기준	유형
1) 5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나 조치가 필요한 대규모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여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
2) 3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이나 조치가 필요한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여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
3) 1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익침해행위가 밝혀져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4) 5,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익침해행위가 밝혀져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5) 3,000만원 이하	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침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익침해행위가 밝혀져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나) 공익신고로 인하여 고질적·구조적·관행적·반복적인 공익침해행위가 밝혀져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6) 500만원 이하	그 밖에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 비고 :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을 말한다.

2. 국민의 관심도, 사회적 파급효과, 공익증진시책의 도입이나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